

# 고 소 장

고 소 인 O O (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) OO시 OO구 OO길 OO

피고소인 △ △ (주민등록번호: 1111111 - 11111111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 고소취지

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○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고 소 사 실

피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○○러○○○○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○○에서 ○○ 쪽으로 가는 도중 ○○학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운전자로서 제한속도를 엄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불의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경적을 울리고 일단 이를 피하도록 한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앞차를 추월하려고 차도의 중앙선부분까지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때마침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보고 우측으로 피하다가 우측부근에 서있던 고소인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고소인을 지면에전도시켜 전치 ○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, 우측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바.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첨 부 서 류



- 1. 진단서
- 1. 목격자진술
- 1. 현장사진

20ㅇㅇ년 ㅇ월 ㅇ일

고 소 인 ㅇ ㅇ ㅇ (인)

			5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림 <b>xxxx</b>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268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
범죄성립 요 건	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때		
형 량	・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<ul> <li>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</li> <li>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</li> <li>○ 대정신청)</li> <li>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</li> <li>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</li> <li>○ (헌법소원)</li> <li>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</li> <li>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</li> </ul>		

### ※ (1) 고소권자

#### 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 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